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13일, 부승찬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부승찬의원)

현행법령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 등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연구요원은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되 의무복무기간(3년) 중 나머지 기간은 다른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도록 함.

그런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완료하여 사실상 대학원에서 대상자에 대한 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수여식 등 소속 대학원의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되며,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3개월 이내)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후단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서덕교)

☐ 현재 병무청은 「병역법」에 따라 박사학위가 실제 해당 전문연구요원에게 수여되는 날(통상 학위수여식, 졸업식)을 기준으로 하여 2년 내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개정안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하여 최종심사 후 학위 승인을 받아 사실상 대학원에서 해당 인원에 대한 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대학원의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2년 내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원이 복무기간 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부승찬의원 대표발의안 등 4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되는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